2026년 7월 30일 [2026-17]

日 외국인투자심사 제도 강화를 위한 외환법 개정 ('26.6.5. 공포)

무역안보관리원 정책연구팀 | **오정미** 선임연구원 (jeongmi@kosti.or.kr)

▸ 개요

- '26.6.5. 日 재무성(財務省)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개정안을 공포[1)]

  * '26.3.17. 재무성이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약 3개월 만에 국회 통과[2)]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접투자 심사 대상 포함, ▲국가안보 위험 완화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직권심사(Call-In) 권한 도입 등임.

  - 아울러 관계부처 간 투자심사 협력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 심사 협의체인 '대일외국투자위원회(JFIC[3)])'를 신설

〈 참고: 일본의 외국인투자심사 제도 강화 연혁 〉

연도	구분	주요 내용
2019년	신고 요건 강화 (외환법 개정)	• 주식 취득 기준치 10% → 1% 하향 • 핵심업종 지정 (신고 면제 불가 등 엄격심사 업종)
2025년	사전신고 면제 요건 강화 (대내 직접투자 정령 개정)	• 사전신고 면제 이용 제한 유형 추가 (외국정부 연계 투자자 등)
2026년	심사대상 범위 확대 및 위원회 신설 (외환법 개정)	• 간접투자 심사 대상 포섭, 사후관리 강화(위험 완화 조치 근거 마련), 직권심사 권한 도입 • 대일외국인투자위원회(JFIC) 신설

1) 日 재무성(財務省),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 '26.6.5.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 예정)
2) 초기 개정안에서, 일부 단어 수정 외에는 큰 틀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
* 무역안보관리원(2026), "일본 외국인투자심사 제도 강화를 위한 외환법 개정 추진 동향", 이슈분석리포트 제2026-9호, '26.4.10.
3) Japan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 주요내용

1 심사범위 '직접투자'→'간접투자' 확대 (제26조 제2항 제9호, 10호 신설)

- 외국투자자(간접 취득자)가 日 기업의 주식·의결권을 직접 보유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 의결권 등을 간접취득하는 행위를 심사대상 포함

  * **(직접투자)** 외국인 → 日 기업 / **(간접투자)** 외국인 → 외국법인(日기업 직접보유) → 日 기업

① **(의결권 50% 취득)** 간접 취득자가 日 기업의 주식·의결권을 직접 보유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50% 이상 취득하는 행위*

  * 의결권 합산시 간접 취득자와 동일기업 그룹에 속하는 법인 등이 보유하는 것 포함

② **(임원 선임 과반수)** 간접 취득자가 日 기업의 주식·의결권을 직접 보유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 행위

〈 참고: 간접투자 (재무성 자료[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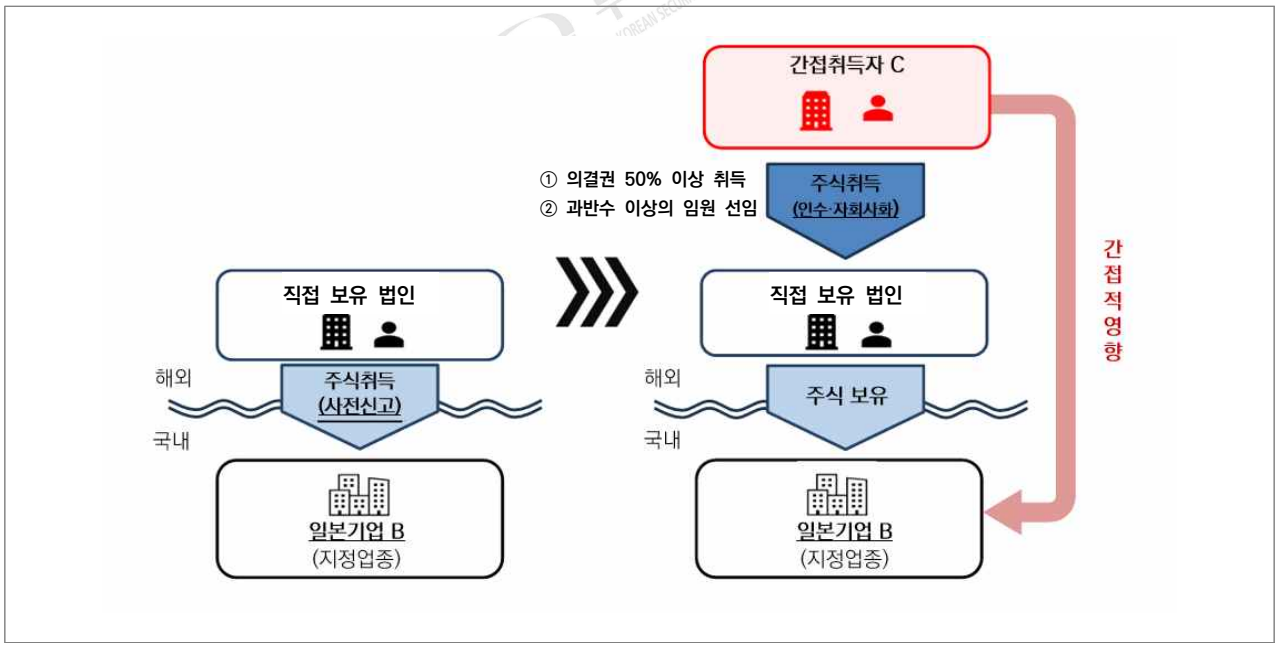

* '직접 보유 법인' 판단시, 간접취득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의결권도 합산하여 1% 이상 정령에서 정한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간접취득자 + 직접보유법인 = 日 기업 주식 비율)

4) 재무성 "대내직접투자심사제도 관세외환심의회 설명자료", '25.10.31.

〈 외환법 제26조 제2항 투자행위의 유형 (제1호~제10호) 〉

구분	내용
비상장社 주식 취득	• 비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1주 이상) (제1호) • 비거주 전부터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지분 양도 (제2호)
상장社 주식 취득	•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 이상 취득 (제3호) • 상장회사의 총 의결권 1% 이상 취득 등 주식 취득 (제4호) (주식취득자 + 밀접 관계자 취득 합산)
경영상 영향	• 회사의 사업 목적 실질 변경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동의 (예: 이사 취임, 중요 사업의 양도 등) (제5호) (동의자 + 밀접관계자 순의결권 비율이 1% 이상의 정령상 기준 이상)
지점 설립 등	• 일본 내 지점 설치, 지점의 종류·사업 목적의 실질적 변경 (제6호)
금전대차	• 국내법인에 대한 1년 초과 금전대차 (대차 잔액이 1억 엔 초과 또는 해당 법인 부채총액의 50% 초과) (제7호)
사업승계	• 사업 양수·합병·분할에 따른 사업 승계 (제8호)
(신설) 간접투자	• **(간접취득)** 외국인이 日 기업의 주식·의결권을 직접 보유하는 외국 법인의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50% 이상 취득하는 행위 (제9호) • **(간접지배)** 외국인이 日 기업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한 외국 법인의 임원 선임권을 행사하여, 임원 과반수 차지 (제10호)

2 외국인투자자 간주 규정 재정비 (제27조 제14항 등[5])

- 외국인 이외의 자(국내 투자자)가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외국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 간주 요건을 추가하여 “계약 또는 외국 법령 등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위해 수행하는 투자” 등까지 범위 확대

〈 ‘국내 투자자’의 외국인 투자자 간주 요건 (세부 범위 정령에서 구체화 예정) 〉

1. 해당 비거주자 등의 계산에 따라 실시되는 것
2. 계약 또는 외국 법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따라 실시되는 것
3. 해당 비거주자 등과 주식 소유관계 등에 따른 영속적인 경제 관계, 친족 관계, 고용 관계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실시되는 것

5) 제27조 제14항, 제27조의2 제7항, 제28조 제9항, 제28조의2 제7항, 제29조의2 제13항 신설, 제55조의5 관련 조문

- 국내 투자자를 통해 외국정부 등 지배·영향 하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 신고 의무화 필요 (정령에서 세부 범위 구체화 예정)

〈 국내 투자자가 외국투자자의 지시·영향 하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의 위험도[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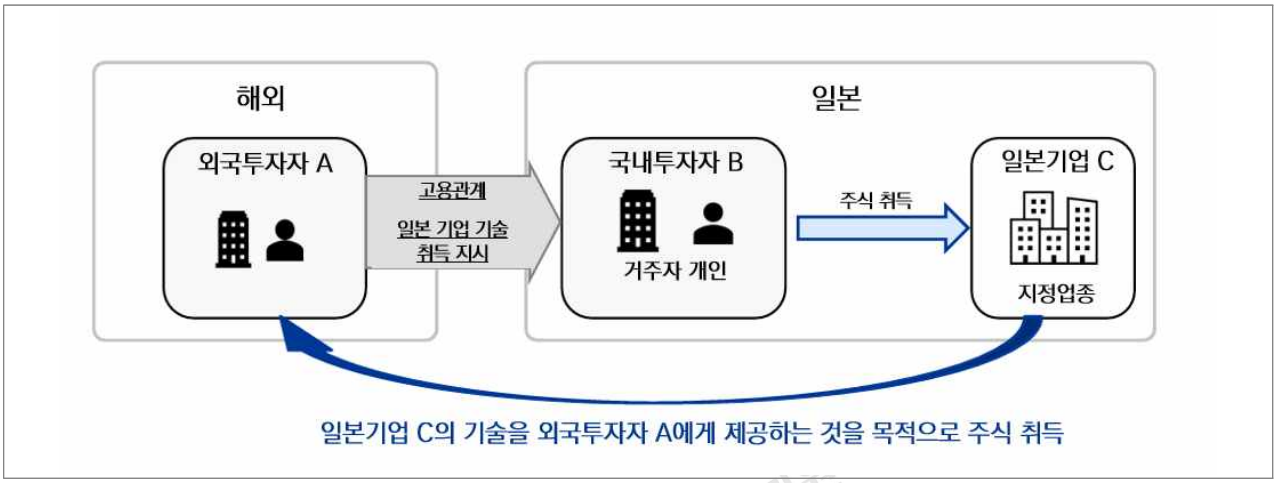

3 국가안보 위험 완화조치 근거 마련 (제27조 등[7])

- 위험 완화 조치*에 대해서 외국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신고단계 → 심사단계 → 사후관리" 측면 절차 명확화

  * (예시) 외국 투자자가 외국 정부 영향을 받아 투자 대상 사업의 수행에 관여하지 않는 것 등

① **(신고단계)** 외국투자자가 신고 단계에서 위험 완화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조치를 신고서에 명시 필요

② **(심사단계)** 외국투자자는 신고 후 심사 단계에서 투자 금지기간 내에 위험 완화조치를 수정하려는 경우 변경사항 신고 필요

③ **(결과단계)**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 완화조치의 변경중단이나, 새로운 완화조치를 권고·명령할 수 있으며, 투자 승인 이후, 완화조치를 수정·변경할 경우에는 신고 필요

  * 변경 심사 결과, 안보위해 투자 해당시 (1차) 수정권고, (불응시) 수정명령

④ **(사후관리)** 투자자가 위험완화 조치 未이행으로 국가안보 위해 투자에 해당될 경우, 주식 처분 등 조치 가능

  *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식 처분 등 필요 조치 명령 가능

6) 재무성 "대내직접투자심사제도 관세외환심의회 설명자료", '25.12.12.
7) 제27조, 제27조의3 신설, 제27조의4 신설, 제28조, 제28조의3 신설, 제28조의4 신설, 제29조, 제29조의2 신설, 제70조 관련 조문

〈 위험 유형에 따른 조치 예시[8] 〉

위험 유형	조치 예시
외국 정부 영향	투자자의 밀접관계자 등에 외국 정부 관계자가 포함되는 경우 ⇨ (완화조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외국 정부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중요 사업의 폐지·축소 등	발행회사의 사업이 국가 안보 확보 등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등의 안정적인 공급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경우 ⇨ (완화조치) 특정 사업의 폐지·축소 등에 관한 제안을 하지 않을 것
민감한 기술·정보 유출	발행회사의 기술 등이 국가 안전 확보 등에 관련된 생산 기반 및 기술 기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완화조치) 발행회사의 기술 등에 관한 기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등의 제안을 하지 않을 것

4 신고 대상이 아닌 非지정업종 투자에 대한 대응 조치 (제29조2 신설)

- 非지정업종 투자라도 안보위해 우려가 큰 경우, 재무대신(및 소관 대신)은 보고 요구 및 주식 처분 등 사후조치 가능 (5년 이내) 단, 고위험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주식·의결권 10% 이상으로 한정

  * 사전 통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투자자 (예: 외국 정부 및 국영 기업)[9]

〈 비지정 업종에 대한 투자 관련 위험에 대한 대응 조치 신설[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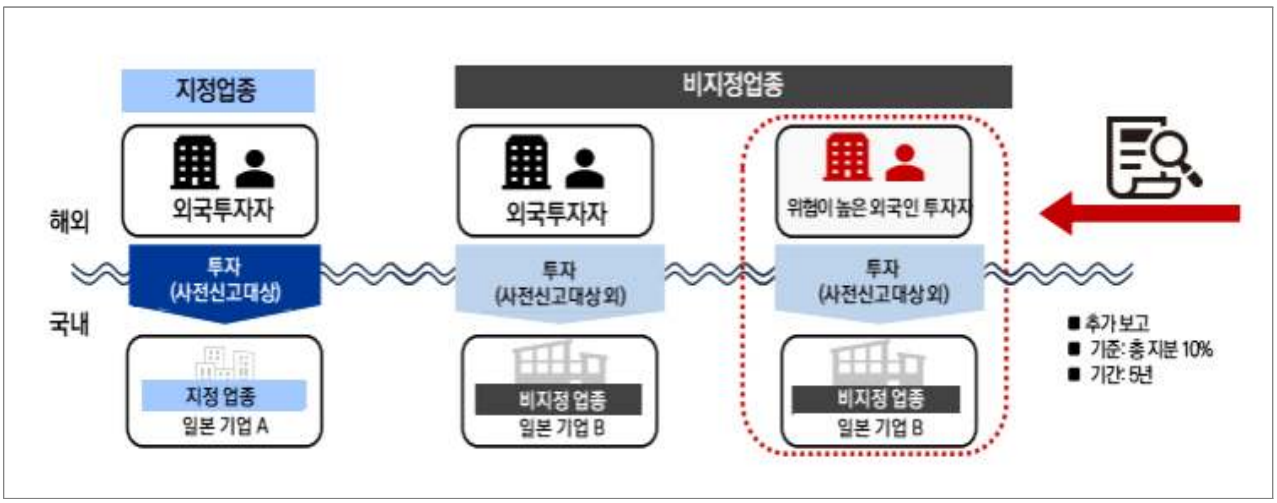

8) 재무성, "외환법 일부개정안 설명자료((参考) 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
9) 정령 규정 사항
10) 재무성, "외환법 일부개정안 설명자료((参考) 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

5 대일외국인투자위원회(JFIC) 신설 (제69조의4 신설)

- 투자심사 측면에서 부처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안보위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대일외국인투자위원회(JFIC) 신설[11)]

  - **(구성)** 공동의장은 재무성과 국가안전보장비서실(NSS)이며, 외무성·경산성·방위성이 구성원으로 참여 (그 외 업종별 관할 부처참여)

    * 본위원회는 국장급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 기구인 간사회는 과장급으로 구성

  - **(역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진행할 때, 안보상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JFIC 구성원의 의견 및 정보를 종합하여 검토 진행

    * ① 투자대상 기업 업종(보유 기술), ② 외국투자자 속성, ③ 외국투자자 투자 형태

〈 대일외국인투자위원회(JFIC) 구성 〉

11) 재무성, "対日外国投資委員会（JFIC：Japan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26.6.29.

▸ 결론 및 시사점

- 금번 일본의 외환법 개정을 통한 투자심사 제도 강화는 '국가안보 위험 전주기 관리·범정부 심사체계'로 전환하려는 종합적 개편으로 평가

  - 일본은 제도개선 검토부터 법률 개정, 범정부 심사기구 설치 등 일련의 절차를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추진

  - 외환법 개정 통과 직후, 대일외국인투자위원회(JFIC)를 출범(6.29.)시켜, 산업·외교·국방·정보·금융 관련 부처의 협의체 마련

- 또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간접투자 범위, 고위험 투자자 기준, 위험 완화조치 등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파악

  - 日 재무성은 대내직접투자 등에 관한 정령·성령·명령·고시 개정안을 일괄 발표하고, 의견조회('26.7.3.~'26.8.2.)를 진행 중[12)]

무역안보관리원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kosti

12) 재무성, 외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정령의 정비 등에 관한 정령(안) 등에 대한 의견모집('26.7.3.)

참고 대일외국인투자위원회(JFIC)[13] ('26.6.29. 기준)

1. 대일외국투자위원회 구성 (국장급 협의·의사결정 기구)

구분	정부부처·기관	구성원 직위
공동의장	재무성	국제국장
	내각관방	내각심의관〔국가안전보장국〕
주요 구성원	외무성	경제국장
	경제산업성	무역경제안전보장국장
	방위장비청	장비정책부장
구성원 (업종별 관할 부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금융청	종합정책국 총괄심의관
	총무성	경제안전보장총괄관
	문부과학성	대신관방 총괄심의관
	후생노동성	의약산업진흥·의료정보심의관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총괄심의관〔신사업·식품산업 담당〕
	국토교통성	국제총괄관
	환경성	환경재생·자원순환국장
옵서버	내각부	정책총괄관〔경제안전보장 담당〕

2. 대일외국투자위원회 간사회 구성 (과장급 실무협의 기구)

구분	정부부처·기관	구성원 직위
공동의장	재무성	국제국 조사과장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참사관
주요 구성원	외무성	경제국 경제안전보장과장
	재무성	국제국 조사과 투자기획심사실장
	경제산업성	무역경제안전보장국 무역관리부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경제산업성	무역경제안전보장국 무역관리부 안전보장무역관리과 국제투자관리실장
	방위장비청	장비정책부 장비정책과장
구성원 (업종별 관할 부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기획과장
	금융청	종합정책국 리스크분석총괄과 IT·사이버·경제안전보장 감독관
	총무성	사이버보안총괄관 소속 참사관 겸 경제안전보장추진실장 보좌
	문부과학성	대신관방 정책과장
	후생노동성	의정국 의약산업진흥·의료정보기획과장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신사업·식품산업부 신사업·식품산업정책과 신사업·식품산업조사관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국제정책과장
	환경성	환경재생·자원순환국 총무과장
옵서버	내각부	정책총괄관〔경제안전보장 담당〕 소속 참사관

13) 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contents/pdf/20260619131155_3.pdf